

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·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. 4. 29
- 다. 상 정 일 자 : 2003. 4. 29
(제109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(제11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환경과장 임 영 태
- 나. 개정사유
 - 제7차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름
 - 동면농공단지공동오·폐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 농공단지 입주사업자가 매년 연말까지 월별 용수사용량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 행정규제 완화
- 다. 주요내용
 - 동면농공단지 입주 사업자가 매년 연말까지 다음연도의 월별 용수 사용량, 오·폐수량, 제품 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조항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근성)

-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도 10월 22일 화순군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오염물질 배출 계획서 등을 매년 연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규제를 금번에 완화코자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, 상 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외결”

7. 첨 부 :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·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·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·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(자료의 제출명령등) ① (생략)</p> <p>②사업자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, 오·폐수량,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8조(자료의 제출명령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삭제)</p>